

내몸의 세포라고 해서 모두 내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미국, 일본, EU 특허청 유전자에도 특허부여 -

앞으로는 내몸속에 붙어있는 세포라도 모두 내 물건처럼 맘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최근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특허청에서 유전자에 대해 이것을 특허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문제의 시작은 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게놈프로젝트(Genome Project)에서 시작된다.

게놈이란 유전물질 DNA를 담고 있는 그릇에 해당하는 염색체 세트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게놈의 경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23개씩 모두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인간 게놈의 염색체 속에는 30억개의 DNA 염기쌍이 질서정연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이들의 조합에 따라 키와 피부색깔, 생김새 등 인간의 유전형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15개국이 30억개의 염기쌍 순서와 염색체내 특정 유전자의 위치를 낱알이 알아내 유전병 등 질병을 치료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원하는 유전형질을 얻기위해 이 계획을 진행중이다. 관련보도에 의하면 이번이 없는한 3년후인 2003년에는 인간의 모든 유전자 정보가 밝혀지는 생명의 지도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NGO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각계 각층의 윤리·도덕적 비판이 만만치 않다. 물론 지난 10년간 유전자의 실체를 밝히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의 대가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부여된 생명 특허이긴 하지만 생명의 영역까지 경제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DNA 이중나선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은 기자회견에서 유전자 특허에 대해 "완전히 미친짓"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어쨌든 미국특허청은 1998년 10월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인사이트사가 신청한 120여만개의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내주었고 일본도 지난 9월 통산성 산하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와 민간기업 10개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헤릭스 연구소의 6,000여개 유전자에 대해 특허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다. 생명공학과 관련한 세계적 특허 흐름이 적어도 발명뿐만 아니라 기술적 고난이도를 요하는 발견까지도 포함되려는 듯하다.

실제로 특허청 유전공학과 이성우 과장은 어느 과학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공학기술 수준이 뛰어난 선진국에서 인간 유전자와 세포에 대해 국내에서 특허를 획득할 경우 한국 생명공학계나 국민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해 한국도 유전자 특허와 관련해 특허개념을 새로이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한국은 초기부터 게놈프로젝트에 참가하는 15개국에 속하지는 않았으며, 정부차원의 연구또한 지난 96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나 정부는 향후 10년간 1,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선진국 5위권의 진입을 목표로 한국형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선진 15개국의 게놈프로젝트 완성이 곧바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단순히 10만개의 유전자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질병치료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즉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며 유전자 구조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은 유전정보의 획득을 위해 막대한 비용의 외화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실>

특허심사 처리기간 선진국 수준에 도달

- '99년말 심사처리기간 24개월 달성 전망 -

현재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기간 28개월이 앞으로 24개월이면 해결된다. 우리진흥회 부설 특허정보센터의 선행기술조사사업등의 대행과 특허청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내부적 상황조정 그리고 최근의 실용신안선등록제도 및 우선심사제도 확대등 다양한 시책이 기간단축에 기여를 하였다.

특허청은 지난 '95-'97년간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급증으로 심사기간이 길어져 그동안 출원인의 심사기간 단축요구를 수용하지 못해왔었으며,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기록하면서도 효율적 행정과 인력투자로 각각 22개월, 19개월에 심사를 마치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다소 그 기간이 길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2000년 심사처리기간 목표를 21개월로 설정" 하였다고 말하고 앞으로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출원기술 조기 권리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실>

인터넷도 특허가 되나요?

- 인터넷 특허상담 쇄도 -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사람들로부터 특허출원을 위한 상담 및 자료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관련기술도 특허법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되고 신규성과 진보성등을 가지고 있다면 특허로서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보급 확산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분야에 관심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의 특허출원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 특허청에도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터넷 특허출원의 경우 '95, '96년에는 인터넷 TV등 하드웨어를 제외하고는 출원건수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최근 인터넷 비즈니스 아이템과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특허청 현직심사관들의 특허 전문 홈페이지 NIP21은 개통 50여일만에 3,500여명의 방문이 이뤄지는등 특허관련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NIP21 홈페이지 : [HTTP://depthome.kipa.go.kr/~nip21](http://depthome.kipa.go.kr/~nip21)>

<편집실>

발특2000/01

